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 경 위

- 발 의 자 : 김재진 의원
- 의안번호 : 제2167호
-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5일
-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 안 이 유

- 동물보호법 제26조에 따라 동물의 건강, 행동양태 등 동물의 기질평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현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했던 동물이 해당 직무에서 퇴역(은퇴)한 경우 입양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주 요 내 용

- 가. 봉사동물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신설)
- 나. 서울특별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의5 신설)
- 다. 위원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5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5제4항 신설)

마. 국가나 사람을 위해 봉사하거나 봉사한 봉사동물의 입양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건강, 행동양태 등 동물의 기질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물보호법」(이하 “법”) 제26조¹⁾는 동물의 기질평가를 위한 ‘기질평가위원회’를 시·도에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²⁾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안 제7조의5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장의 업무 및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법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반려 가구가 타 광역자치단체보다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필요 위원 수의 상향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임.³⁾

1) 「동물보호법」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서울시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 10명(수의사 5명, 훈련사 5명), 임기(2024.6.25.~2026.6.24.)

- 안 제2조제16호는 ‘봉사동물’을 「장애인복지법」 제40조4)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법 시행령 제3조5)에서 정하는 동물로 정의한 것임.
- 안 제25조제5항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입양 활성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지원 및 인식개선⁶⁾을 통해 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의적절하다 판단됨.

4)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의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 가. 국토교통부
 - 나. 경찰청
 - 다. 해양경찰청
-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6)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2(장애인의 보조견 인식개선) [본조신설 2024.10.22.] [시행일: 2025.4.23.]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